

■ 논 단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

정 현 기

주저자 /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 국제무역학 박사

박 세 현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 국제무역학 박사 / 관세사

요 약 문

본 연구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을 중심으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상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구조를 정리한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관계, 관세법상 '수입' 및 '반입' 개념, 수입신고 수리의 법적 의미, 그리고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취지를 중심으로 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판결은 FTA 관련 법령이 '수입'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 FTA관세법의 체계를 통하여 관세법상 개념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의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취지를 높은 세율 적용의 회피 방지라는 규범목적과 연결함으로써, 통관편의와 세율 적용의 공정성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법리가 단순한 판례해석에 그치지 않고, 세율변경기 수입 거래에서 계약, 운송, 신고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통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실무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자와 통관대리인은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관련된 리스크를 단순한 사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분쟁을 관세법 체계와 무역실무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원산지판정,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FTA 특혜관세 전반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고, 비교법적·실증적 분석 역시 후속 과제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 협정관세율, 수입시기, 수입신고 수리, FTA관세법, 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반입

— <目 次> —

I. 서론	2. 수입신고 수리 시점 기준의 법리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의미
II.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 구조	3.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1. 사건의 개요	IV. 무역실무적 함의 : 통관 컴플라이언스 적용
2. 원심의 판단 요지	1.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의 실무 구조
3. 대상판결의 쟁점 구조	2. 수입자 · 통관대리인의 역할분담과 내부 통제 방안
III. 대상판결의 법리 분석	V. 결 론
1. 협정관세율 적용기준과 수입 개념의 해석	

I.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 문제는 통상적으로 원산지 기준의 충족,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 직접운송 원칙 등 특혜관세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¹⁾ 농산물 분야에서는 시장보호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 따라서 농산물 관련 FTA 분쟁에서는 단순히 관세 인하 여부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품이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기준을 어떠한 법적 구조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³⁾ 이 사건은 한·호주 FTA 적용하에서 수입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하여, 시기별 협정관세율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입’ 또는 ‘반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판단과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1) Patricia Augier·Michael Gasiorok·Charles Lai-Tong,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flows”, 『Economic Policy』, Vol. 20, No. 43(2005) ; Summary, 1. Introduction, pp. 567-570; Earl L. Grinols·Peri Silva, “Rules of origin and gains from trade”, 『Economic Theory』, Vol. 47(2011) ; Abstract, 1. Introduction, pp. 159-160
2) 김종범, “특혜원산지규정의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미 FTA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 제83호(2008), 93면.
3)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문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이 하나의 분쟁구조 안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론적 중요성이 크다.

이 사건이 제기하는 쟁점은 단순히 특정 날짜의 세율을 선택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상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입' 또는 '반입'의 의미를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관세법상 수입시기와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셋째,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가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구조가 위와 같은 해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은 FTA 특혜관세 법리, 관세법상 수입 개념, 통관절차 규율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대상판결의 의미는 기존 판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은 관세법상 '반입'과 수입시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위 판결과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관세법상 일반적 수입 개념 법리가 농산물에 관한 FTA 협정관세율 분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를 어떠한 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정교한 검토도 가능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 대법원 2025두34241 판결을 중심으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과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대법원 2019도6588 판결과의 비교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이 갖는 법리적 의미를 해명하고, 농산물과 같이 시기별 협정관세율 구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해석이 가지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를 정리한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FTA관세법, 관세법의 체계관계 속에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과 수입시기의 의미를 검토하고, 대법원 2019도6588 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적 위치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농산물 수입거래와 통관실무에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Ⅱ.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 구조

1. 사건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로, 한·호주 FTA 적용하에서 수입된 농산물의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둘러싸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칩용 신선감자에 대하여 시기별로 상이한 협정관세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 연결된 분쟁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원고 회사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칩용 신선감자 117.5톤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1. 4. 30.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상 협정관세율 0%의 적용을 전제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물품은 2021. 4. 9. 선박에 적재되어 호주 멜버른항을 출발하였고, 2021. 4. 27.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다음, 2021. 5. 1. 17:06경 부산신항에 입항하였다.

그런데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시점을 2021. 4. 30. 이 아니라 2021. 5. 1.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0%가 아닌 141.8%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관세 104,518,350원과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과 FTA관세법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입’ 또는 ‘반입’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해당 개념의 의미를 관세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전개하였다.

원심은 관세법상 ‘반입’을 단순한 물리적 도달이나 특정 수역으로의 진입으로 보지 않고, 외국물품이 관세법상 구속에서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법적 상태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입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되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상 협정관세율이 수입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에 주목하였다. 즉,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는 0%가 적용되지

4)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

만,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은 세율 변경이 예정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심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2021년 5월 1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비례원칙 위반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선박의 입항지연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물류차질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상판결의 쟁점 구조

이 사건의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에 관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단일한 시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의 해석문제가 단계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장을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먼저 판단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따라 다음 쟁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상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입’ 또는 ‘반입’의 의미를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문언 자체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에 따라 이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대상판결의 출발점이 되는 쟁점으로서, 이후 수입시기와 세율 적용시점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의 전제가 된다.

두 번째 쟁점은 관세법상 수입시기를 어떠한 시점으로 파악할 것인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다 이른 시점의 ‘반입’을 전제로 협정관세율 0%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수입신고 수리와 결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외국물품의 물리적 이동이나 도달 사실만으로 수입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관세법상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다. 이 쟁점은 관세법상 일반적 수입 개념과도 연결되므로, 기존 판례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은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관세법상 수입시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시기별 협정관세율 구조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수입’의 의미만 해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해석 결과가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 판단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수입시기에 관한 해석이 곧바로 세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는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별도의 검토대

상이 된다.

네 번째 쟁점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가 위와 같은 해석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의 가능 여부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기별 협정관세율의 적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 제한의 취지가 이 사건의 세율 적용 문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의 쟁점 구조는, 먼저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 개념의 해석기준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의미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의미를 통하여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쟁점 구조에 따라 대상판결의 법리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그 해석이 농산물 수입거래와 통관실무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한다.

III. 대상판결의 법리 분석

1. 협정관세율 적용기준과 수입 개념의 해석

가.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관계

대상판결에서 먼저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한·호주 FTA와 FTA관세법이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수입' 개념을 자유무역협정 문언만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FTA관세법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또한 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⁶⁾ 이러한 규정 구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에 사용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협정 자체가 그 의미를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이행법률인 FTA

5) FTA관세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의 용어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6) FTA관세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관세법을 매개로 하여 관세법상 개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러한 체계에 기초하여,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을 자유무역 협정과 분리된 독자적 개념으로 볼 수 없고, 관세가 실제로 부과·징수되는 국내법 체계 안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FTA ‘수입’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법이 이를 보충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며, 대상판결은 FTA관세법 제2조 제2항과 제3조의 구조를 통하여 관세법상 개념 해석으로 나아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 문제를 단순한 협정문 해석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 관세법 질서 안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협정관세율은 국제협정에 근거한 특혜관세 제도이지만, 그 실제 적용은 국내 관세행정의 절차와 법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렇다면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 역시 국내법상 권리·의무의 확정 구조와 접합되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 관세법상 수입과 반입의 의미

이와 같은 체계관계가 확인되면, 다음으로는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반입’을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나 장소적 진입으로 보지 않았다. 관세법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구별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규율하며, 신고수리 전에는 물품의 반출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상 ‘반입’은 단순한 장소적 진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와 결부된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⁷⁾

대법원 2019도6588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상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국내수역 또는 항만에 도달하였다는 물리적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호주 FTA상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의미를 넓게 파악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 또는 영해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 영역이 아니고, 연안국은 그 수역에서 자원 관련 주권적 권리와 일정한 관할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였다

7) 박민규,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법리 -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2022), 151-154면.

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물품이 국내법상 또는 FTA상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의 '반입' 여부도 국내 관세법 체계가 예정한 수입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대상판결은 '반입'의 의미를 물리적 이동의 관점이 아니라 물품의 법적 지위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 점은 관세법상 일반적 수입 개념 법리를 그대로 확인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법리를 자유무역협정상 협정관세율 적용기준 해석에 연결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다.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

이와 같이 보면,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은 FTA 문언만으로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FTA관세법의 준용 규정을 통하여 관세법 제2조에 따라 해석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법상 '반입'은 단순한 물리적 도착이나 수역 진입이 아니라,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를 통하여 관세법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유통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역시 선박의 이동경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시점이 아니라, 관세법 체계상 수입이 성립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대상판결은 2019도6588 판결과 연결되면서도 구별된다. 2019도6588 판결이 관세법상 반입과 수입시기의 일반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라면, 대상판결은 그 일반 법리를 한·호주 FTA상 농산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분쟁으로 확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판결은 모두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대상판결은 여기에 시기별 협정관세율 구조와 자유무역협정 해석의 문제를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제1단계 법리는, 먼저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입' 및 '반입'의 의미를 관세법상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검토할 수입신고 수리 시점 기준과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2019도6588 판결과 대상판결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2019도6588 판결은 관세법상 반입과 수입시기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고, 대상판결은 그 일반 법리를 한·호주 FTA상 농산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분쟁에 확장하여 적용한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법원 2019도6588 판결과 대법원 2025두34241 판결의 비교

구분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사건의 성격	수입자동차 관련 형사사건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의미와 적용시점
중심 법령	관세법	한·호주 FTA, FTA관세법, 관세법
‘반입’에 대한 이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어 자유유통 상태에 이르는 것	관세법상 개념을 전제로 해석하며, 물리적 도착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만으로는 부족
수입시기 판단	수입신고 수리 시	수입신고 수리 시
판결의 기능	관세법상 일반적 수입 개념 법리 제시	위 일반 법리를 FTA 협정관세율의 시기 적용 문제에 확장·구체화

자료 : 연구자 정리

2. 수입신고 수리 시점 기준의 법리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의미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을 FTA관세법의 준용 구조를 통하여 관세법상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관세법상 수입의 성립시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세율변경이 예정된 경우 그 제도의 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다.

가. 수입신고 수리 시점 기준의 법적 근거

관세법 체계에서 수입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절차 종료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구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내국물품으로 전환되거나 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는 외국물품의 법적 지위가 변동하는 결정적 시점으로 기능한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이 수리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44조 제1항은 수입신고의 원칙적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

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는 그 허용 범위와 제한을 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와 제17조는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적용 법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구조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상 수입의 성립과 관세의 확정은 물품의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절차적 시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⁹⁾

대상판결은 바로 이러한 관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역시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단순히 자유무역협정 문언상 권리의 확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 관세행정의 부과·징수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이상 그 기준시점 또한 관세법상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따라서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거나 영해에 접근하였다는 사정, 또는 항만에 도달하였다는 물리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리적 이동은 물품의 운송 상태를 보여주는 사실에 불과하고, 관세법상 수입의 성립은 그러한 사실만으로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 문제를 물품의 위치가 아니라 법적 지위의 변동 시점과 연결함으로써, 세율 적용시점과 통관법 체계를 일치시키는 해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의 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고,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시기별 세율 구조 아래에서 '수입'의 성립시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가 분석상 동일한 층위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율 적용시점은 어느 시점의 세율체계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수입시기는 관세법상 수입이라는 법률요건이 언제 성립하는지의 문제이다. 전자는 적용 법령과 세율 선택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적 상태변동의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 두 문제를 긴밀하게 결부시킨 것은, 한·호주 FTA와 FTA 관세법 시행령이 시기별 협정관세율의 적용기준을 '수입'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협정관세율 규정 자체가 일정 시점까지 '수입'된 물품과 그 이후

8) 박민규, 앞의 논문, 151-152면.

9) 이상신,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1권 제1호(2020), 29-31면.

‘수입’된 물품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세율 적용시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상판결은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를 추상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법령 구조 아래에서는 양자가 규범적으로 결합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대상판결은 “세율 적용시점 = 수입시기”라는 일반 명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율 규정이 ‘수입’을 기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가 관세법상 수입시기로 귀착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수입시기의 해석이 곧바로 세율 적용 결과를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¹⁰⁾

이러한 해석은 2019도6588 판결과의 비교에서도 중요하다. 2019도6588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일반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었으나, 그 자체가 세율 적용시점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그 일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농산물에 대한 시기별 협정관세율 구조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수입시기가 세율 적용시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의미는 일반 수입 개념 법리를 확인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리를 특혜관세의 시기적용 문제에 접속시켰다는 데 있다. 나아가 과세요건이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통하여 그 사실행위의 성립시점이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수입’의 성립 여부는 물리적 이동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경제적 기대가 아니라 관세법 체계가 정한 법적 기준시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¹¹⁾

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기능과 한계

문제는 관세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신속성과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제도는 수입신고 시점을 물품의 실제 도착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 역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 도착하

10) 박훈, “과세요건이 사실행위인 경우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문제”,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2017), 154-162면.

11) 박훈, 앞의 논문, 160-162면.

12)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 한국 관세법과 USC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제5권 제1호(2009), 105면.

기 전에 관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이 추가되는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주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임의로 앞당기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세율변경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후의 절차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가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예외적 장치일 뿐, 세율변경에 따른 불리한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게 되면 수입자는 실제 도착 전의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결과가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바로 그 점에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라.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해석상 의미

대상판결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취지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신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는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이 단순히 신고 가능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적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해석에도 실질적인 보강 논거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9두22072 판결에서,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의 적용이 예고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한·호주 FTA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분쟁의 맥락에서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만약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을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시점이나 물리적 도착의 초기 단계로 이해한다면, 관세법 시행령이 높은 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한 취지는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수입의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와 결부시키고, 세율변경이 예정된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해석을 취하면, 협정관세율 적용기준과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규범목적이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을 단순한 보조 논거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 수입 개념과 협정관세율 적용기준 해석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구조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해석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법적 지위 변동 구조와 부합할 뿐 아니라, 세율변경기 조기 신고를 통한 회피를 방지하려는 입향전 수입신고 제한 제도의 목적과도 일관성을 가진다.

마. 소결

결국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을 관세법 체계에 따라 해석한 다음, 그 구체적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확정하였다. 나아가 관세법상 입향전 수입신고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세율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허용범위가 제한되며, 이러한 제한은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기 신고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이나 입향 전 신고사실이 아니라, 관세법상 수입이 성립하는 시점과 입향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취지가 결합되어 2021년 5월 1일부터의 협정관세율 141.8% 적용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대상판결의 제2단계 법리는,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수입신고 수리라는 법적 시점에 결부시키고, 입향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을 통하여 그러한 해석의 규범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는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에 관한 분쟁을 단순한 운송 일정이나 물리적 도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관세법상 물품의 법적 지위 변동과 세율 회피 방지라는 제도 목적 속에서 파악한 것으로 이해된다.¹³⁾

3.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첫째, 대상판결의 의의는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 사용된 ‘수입’ 개념을 자유무역협정 문언에만 의존하여 해석하지 않고,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데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설정되더라도, 그 실제 적용은 국내 관세행정의 절차와 법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 역시 국내법상 권리·의무 확정 구조와 접합되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FTA 해석과 국내 관세법 해석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9도6588 판결이 제시한 관세법상 일반적 수입 개념 법리를 FTA 협정관세율 사건에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9도6588 판결은 관세법상 ‘반입’과 수입시기의 의미를 일반 법리 차원에서 정리한 판결이었다. 반면 대상판결은 그 일반 법리를 농산물에 대한 시기별 협정관세율 구조와 결합하여, 수입시기 해석이 곧 협정관세율 적용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즉, 대상판결은 단순히 기존 판례를 원용한 것이 아니

13) 박훈, 앞의 논문, 160-162면.

라, 기존 일반 법리를 특혜관세의 시기적용 문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대상판결은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의 관계를 해석상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 두 개념을 추상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법령 구조 아래에서는 협정관세율 규정이 '수입'을 기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수입'의 의미가 관세법상 수입시기로 귀착되므로 결과적으로 양자가 규범적으로 결합된다고 보았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단순한 날짜 판단이 아니라, 적용세율의 결정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대상판결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의미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해석과 연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대상판결은 세율변경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를 높은 세율 적용 회피의 방지에서 찾았고,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문제를 절차적 편의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았다. 즉,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예외적 허용과 그 제한이 단순한 기술적 절차문제가 아니라, 세율 적용의 공정성과 회피 방지라는 규범 목적과 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선 대상판결은 법적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세율변경기 수입거래에서 나타나는 외부적 지연위험과 부담 형평 문제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수입거래에서는 선적, 환적, 항만 혼잡, 기상, 검역, 물류지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개입하고, 그 중 상당수는 수입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수입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사정에 따라 중대한 관세부담 차이를 감수하여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중시한 반면, 거래 현실의 변동성과 형평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시점 주장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자유무역협정 문언상 '대한민국으로 반입'이라는 표현과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접속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전개하지는 않았다. 물론 관세법 체계에 따라 수입 개념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문언에서 사용된 '반입' 개념이 국내법상 수입 개념과 어떠한 범위에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법상 공간 개념이 그 해석에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보충 논증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결합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결합이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법령 구조에 따른 해석 결과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도 있다.¹⁴⁾ 특히 현행 관세법상 신고납부 구조에서는 수입신고수리와 납세신고수리가 법

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다른 관세사건에 일반화할 때에는 통관절차상 수리와 조세채무 확정구조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만일 이를 일반론적으로 “세율 적용시점은 곧 수입시기”라고 이해하게 되면, 각종 특혜관세·일반관세·관세유예 제도에서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범위와 한계를 별도로 따져야 하고, 특히 거래를 재구성하거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과세요건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쉽게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법리 역시 관세법 일반이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 법령 구조에 한정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⁶⁾ 관세평가 영역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관세영역의 특수성과 조세법률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판결의 해석도 다른 관세법 영역으로 확장할 때에는 그 적용기반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따라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그 법리를 다른 관세사건에 일반화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종합하면,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분쟁을 단순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FTA 관세법과 관세법의 관계, 관세법상 수입 개념, 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시기의 관계,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기능이 결합된 해석문제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법리적 가치를 가진다. 특히 대법원 2019도6588 판결이 제시한 일반 법리를 농산물 FTA 협정관세율 사건에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반 수입 개념 법리와 특혜관세의 시기적용 문제 사이를 연결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래 현실의 형평 문제와 국제법적 공간 개념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압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론과 후속 판례·학설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IV. 무역실무적 함의 : 통관 컴플라이언스 적용

1.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의 실무 구조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을 관세법 체계에 따라 해석하고, 그

14) 이상신,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39집 제3호(2023), 145-148면.

15) 김용태·이은재, “관세법상 신고납부 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2017), 15면.

16) 이상신, 앞의 논문, 146-148면.

17) 김용태,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3호(2024), 35-36면.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해석론적으로는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세율 회피 방지라는 규범목적에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역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의 법리는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거래 전 과정에 걸쳐 관세부담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고 배분되는지를 재구성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협정관세율의 문제는 더 이상 원산지 판단이나 증빙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관단계 자체가 관세리스크의 핵심 통제지점이 되는 문제로 전환된다.¹⁸⁾ 국제거래에서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 납기, 물량 및 비용구조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을 계획한다. 그러나 세율변경기에는 이러한 계획이 선적, 항차, 환적, 입항, 하역,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의 각 단계와 결합하면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즉,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특정 시점의 세율표 확인만으로 관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개시부터 통관완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누적·현실화되는 위험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적어도 다음의 네 단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계약 및 거래설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수입자는 예정 세율, 선적 가능 시점, 도착예정일,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여부, 세율변경일 전후의 일정 민감도, 그리고 추가 관세부담 발생 시 가격전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 시점을 경계로 협정관세율이 현저히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에는, 거래조건과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법적 기준시점이 수입신고 수리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운송 및 입항관리 단계이다. 대상판결 이후 선박의 단순한 이동이나 특정 수역 진입 사실은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는 직접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입항일과 그 이후의 통관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따라서 수입자는 출항일만이 아니라 환적 여부, 예상 항로, 항만 혼잡, 기상, 검역·검사 가능성 등 입항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세율변경기가 임박한 거래에서는 입항예정일 자체가 실무상 법적 민감 정보를 가지므로, 물류운영은 단순한 운송관리의 차원을 넘어 관세리스크 관리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신고 및 수리 단계이다.¹⁹⁾ 대상판결은 ‘수입’의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와 결부시킴으로써, 통관절차를 협정관세율 적용의 핵심 결정 단계로 위치시켰다. 이로써 신고자료 준비, 신고 시기 판단,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여부 검토, 세관 대응 및 신고오류 방지가 모두 세율 적용 결과와 직접 연결된다.²⁰⁾ 특히 세율변경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신고를 빨리 하는 것만으로는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고, 해

18) Augier et al., *supra* note 1, at 567-571.

19)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액심사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도록 하며, 제5항은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을 인정한다.

20) 김태인, 앞의 논문, 102-107면.

당 품목이 관세법 시행령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는 비용귀속 및 사후대응 단계이다. 세율변경으로 예상보다 높은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담은 단순한 세액 증가에 그치지 않고 거래원가, 판매가격, 재고운영, 손익계획 및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²¹⁾ 따라서 수입자는 추가 관세발생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공급자·구매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통관대리인의 신고오류 또는 정보전달 지연이 개입한 경우 책임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세관 단계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 운송 - 신고 -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상판결 이후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법적 개념 해석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거래운영과 통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관리하여야 할 핵심 리스크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율변경기에는 물품의 이동과 신고 절차가 단순히 물류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부담을 결정하는 법적 변수로 기능하며, 수입자는 이를 고려하여 선적계획, 입항예정 관리, 신고자료 준비, 통관대리인 협업 및 가격전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수입실무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을 둘러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수입자·통관대리인의 역할분담과 내부통제 방안

이러한 리스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실무상 중요한 과제는 수입자·통관대리인·기업 내부 의사결정체계 사이의 역할분담과 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대상판결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실무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법리가 전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최소한 수입자, 통관대리인, 그리고 기업 내부 의사결정체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에서도 형식적 신고명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입절차를 지배하고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 역시 명목상 신고주체만이 아니라 거래를 실질적으로 설계·통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부담하는 수입자를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²²⁾

우선 수입자는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와 적용시점에 관한 1차적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다. 수입자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고 통관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²³⁾ 해당 품목의 세율변경일, 적용요건,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여부, 예정 입항일과

21) 김민정·박훈,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租稅와法』 제8권 제1호(2015), 160-161면.

22) 김민정, 박훈, 앞의 논문, 160-161면.

23) 최준호,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FTA 가산세 부과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6권 제5호(2025), 83-87면.

신고수리 예상시점, 그리고 지연 발생 시 추가 관세부담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세율변경기가 임박한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언제 도착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언제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세율변동에 따른 비용분담 조항이나 일정지연 대응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관대리인은 단순한 신고대행인이 아니라,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를 조기 식별하고 수입자에게 경보하는 실무상 핵심 조력자로 기능하여야 한다. 통관대리인은 해당 품목의 세율변경 구조,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여부, 예상 입항일과 신고가능시점, 필요한 서류의 사전 확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수입자에게 신고전략과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세율변경기에는 “신고 자체가 가능한가”와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어떤 세율이 적용될 것인가”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신고를 전제로 거래가 설계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관대리인의 역할은 사후 서류제출이나 형식적 신고업무에 머물지 않고, 법적 기준 시점에 대한 해석을 거래운영에 연결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에서는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를 개별 담당자의 경험에 맡기지 않고, 체크리스트형 내부통제 체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통제항목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가. 계약 단계 통제

세율변경일, 협정관세율 단계조정 여부, 해당 품목의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가능성, 도착예정일과 수리예상일 간 차이, 추가 관세발생 시 가격조정 또는 비용전가 조항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원산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적용시점 기준으로 실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선적·운송 단계 통제

출항일, 환적항, 예상 항차 지연요인, 항만 혼잡, 검역·검사 가능성, 세율변경일 전후의 도착민감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세율변경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단순 ETA 관리가 아니라, 지연 발생 시 관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까지 산정해 두어야 한다.

다. 신고 준비 단계 통제

원산지증빙,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검역 관련 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여부를 법령상 제한규정과 함께 검토하여

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 질의 또는 내부 법무검토를 통해 해석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줄일 필요가 있다.

라. 신고 및 수리 단계 통제

실제 입항일, 하역 가능 시점, 신고 접수 가능 시점, 세관 보정요구 가능성, 수리 지연요인을 점검하고, 수입신고 수리일이 세율변경일 전후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통관대리인과 수입담당부서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특히 중요하다.

마. 사후관리 단계 통제

실제 적용세율과 예상세율 사이의 차이, 추가 관세부담의 원인, 계약상 비용귀속, 내부 승인 절차의 적정성, 향후 유사거래에서의 개선사항을 사후적으로 기록·평가하여야 한다. 반복거래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세율변경기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형 내부통제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기업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 절차로 전환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에 관한 리스크는 단순히 법무 또는 관세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 물류, 통관, 재무, 영업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교차기능적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세율변경기 품목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통관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준, 리스크 관리 추가 비용 발생 시 의사결정 권한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는 수입자와 통관대리인 사이의 역할분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입자는 거래설계와 비용부담 구조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통관대리인은 법적 기준시점과 신고가능성을 점검하는 전문 조력자로 기능하며, 기업 내부 의사결정 체계는 양자의 정보를 결합하여 최종적인 거래 실행 여부와 대응전략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 구조가 마련될 때, 대상판결의 법리는 사후 분쟁의 기준을 넘어 기업이 사전에 관리하여야 할 통관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의 의미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그 해석이 수입거래 실무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대상판결은 한·호주 FTA 및 FTA관세법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수입’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완결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를 매개로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단순한 물리적 도착이나 영역 진입의 시점이 아니라,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의 취지를 높은 세율 적용의 회피 방지라는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통관절차상 편의와 조세부담의 공정한 귀속 사이의 규범적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법리는 해석론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협정관세를 적용시점을 둘러싼 분쟁에서 FTA관세법과 관세법의 체계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입' 개념을 국내 관세법 체계 안에서 정합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반입'의 의미를 단순한 장소적·물리적 도달 개념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통한 법적 지위 변동과 결합하여 이해한 점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구별 및 자유유통의 개시라는 관세법의 기본 구조를 협정관세를 적용시점 판단에 일관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세율 적용기준을 통관법 체계와 연결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접근은 거래 현실에서의 예측가능성과 부담 형평 문제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수입자는 계약 체결, 선적, 환적, 입항 및 통관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변수에 노출되며, 그중 상당 부분은 수입자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결과가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전적으로 결부될 경우, 수입자는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운송지연, 항만혼잡, 검사절차 지연 등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0%와 141.8% 사이의 현저한 세율 차이는, 적용시점 해석이 단순한 개념 논쟁에 그치지 않고 거래 전체의 수익성과 비용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취지를 세율 회피 방지로 이해하는 것은 제도 목적상 설득력이 있으나, 정상적 거래계획과 회피적 거래를 구분하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협정관세를 적용시점과 관련된 해석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율변경기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관세인상이 예정된 품목에 관하여, 수입자는 더 이상 선적시점이나 예상 입항시점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예측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신고 수리 가능시점까지를 포함한 절차 전반을 기준으로 거래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는 협정관세율 문제가 원산지 판단이나 증빙 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약, 물류, 통관 및 비용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통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임을 뜻한다.²⁴⁾

24) Augier et al., *supra* note 1, at 603-60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무역실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리스크를 거래운영과 내부통제의 문제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수입자는 세율변경 켈린더를 기반으로 한 사전 점검, 예상 입항일과 수리 가능일의 구분 관리, 통관대리인과의 역할분담 명확화, 가격전가 가능성에 대한 계약적 검토, 그리고 입항·신고·수리 관련 기록의 체계적 보존을 통하여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통관대리인 역시 단순한 신고대행자의 지위를 넘어, 세율변경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성, 수리 지연 가능성 및 절차상 제약을 사전에 설명하고 조율하는 전문적 조력자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결국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적 기준은 기업에게 사후적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기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문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본 연구는 원산지판정,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FTA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된 다른 핵심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이 기업의 원가구조와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았다. 또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세율적용 시점 문제에 대한 외국의 규율방식과 해석론을 충분히 대조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향후에는 세율변경기 품목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사례 추적, 통관대리 책임 및 계약상 위험배분 구조에 관한 후속 연구, 그리고 FTA 특혜관세 적용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기준으로서의 '수입' 개념을 관세법 체계에 따라 해석하고, 그 성립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파악함으로써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그 법리는 수입자에게 통관절차와 세율변경기의 위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²⁵⁾ 따라서 대상판결은 단순한 판례법리의 확인을 넘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거래에서 법적 기준과 무역실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향후 협정관세율 적용시점 관련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논문접수 : 2026. 03. 19. / 심사개시 : 2026. 04. 17. / 게재확정 : 2026. 04. 21.)

25) 이상진, 앞의 글, 159~160면.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민정, 박훈,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租稅와法』 제8권 제1호 (2015년 6월)
- 김용태,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3호(2024년 9월)
- 김용태, 이은재, “관세법상 신고납부 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2017년 12월)
- 김종범, “특혜원산지규정의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미 FTA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 제83호(2008년 10월)
-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 한국 관세법과 U.S.C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제5권 제1호(2009년 4월)
- 박민규,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법리 -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2022년 5월)
- 박훈, “과세요건이 사실행위인 경우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문제”,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2017년 5월)
- 백혜영, “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별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27권, 제2호(2022년 12월)
- 이상신,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39집, 제3호(2023년 8월)
- 이상신,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1권, 제1호(2020년 2월)
- 최준호,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FTA 가산세 부과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6권 제5호(2025년 10월)

<외국문헌>

- Augier Patricia., Gasiorek Michael and Lai-Tong Charles,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Flows”, Economic Policy, vol. 20 no. 43(2005).

Grinols, Earl L. and Silva, Peri, "Rules of origin and gains from trade", *Economic Theory*, Vol. 47, No. 1(2011).

Abstract

A Study on the Timing of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Rates and Import Declaration Accepta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25Du34241 (Dec. 11, 2025) -

Jeong, Hyunki
Park, Sehyun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iming of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rates under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5Du34241, rendered on December 11, 2025. After setting out the factual background of the case a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issues involved, the study analyzes the Court's reasoning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the FTA Customs Act) and the Customs Act, the meaning of "import" and "bringing into Korea" under the Customs Ac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acceptance of an import declaration, and the purpose of the restriction on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where the relevant FTA-related legislation does not independently define the meaning of "import," the Court proceed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cept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FTA Customs Act by reference to the concepts used in the Customs Act. On that basis, the Court regarded the point of impor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pplicable preferential tariff rate, as the time at which th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The Court also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s facilitation and fairness in tariff application by linking the restriction on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s to the normative objective of preventing the avoidance of a higher tariff rate.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cision is significant not merely as a judicial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case, but also as a practical benchmark for customs compliance risk management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import transactions during periods of

tariff-rate change, including contracting, transportation, declaration, and post-clearance management. In this respect, importers and customs brokers should understand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timing of preferential tariff-rate application not merely as an issue of ex post dispute, but as a matter of ex ante internal control.

This study contributes by linking disputes over the timing of preferential tariff-rate application to both the structure of customs law and the realities of trade practice. However, it is limited in that it does not comprehensively address the broader range of preferential tariff issues under FTAs, such as origin determination,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nor does it provide extensive comparative or empirical analysis.

Key Words : Preferential tariff rate, import timing, import declaration acceptance, FTA Customs Act, Customs Act,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 entry into Korea